

# 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## 1. 대상 펀드:

| no | 펀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투자 대상 자산 | 모펀드 투자 대상자산 | 결산 | 변동성 | 변경 사항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|------------|
| 1  | 미래에셋FINEMMF1호(국공채)                | ○        | -           | -  | -   | -          |
| 2  | 미래에셋MMF1호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| -           | -  | -   | 5), 6)     |
| 3  | 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1호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| -           | -  | -   | 7)         |
| 4  | 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2호(국공채)               | ○        | -           | -  | -   | 5), 6), 7) |
| 5  |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(국공채)                | ○        | -           | -  | -   | 5), 6)     |
| 6  |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(국공채)              | ○        | -           | -  | -   | -          |
| 7  | 미래에셋법인전용MMFA-4호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| -           | -  | -   | -          |
| 8  | 미래에셋코리아중기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            | ○        | -           | -  | -   | -          |
| 9  | 미래에셋OCIO-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       | -        | ○           | -  | -   | -          |
| 10 |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   | -        | ○           | -  | -   | -          |
| 11 |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)        | -        | ○           | -  | ○   | 7)         |
| 12 |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      | -        | ○           | -  | -   | -          |
| 13 |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   | -        | ○           | -  | -   | -          |
| 14 |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          | -        | ○           | ○  | ○   | -          |
| 15 |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        | -        | ○           | -  | -   | -          |
| 16 | 미래에셋상생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            | -        | ○           | -  | -   | -          |
| 17 | 미래에셋연금인사이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      | -        | ○           | -  | -   | 7)         |
| 18 |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(분배형) | -        | ○           | ○  | ○   | -          |
| 19 |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           | -        | ○           | -  | -   | -          |
| 20 | 미래에셋자산관리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          | -        | ○           | -  | -   | -          |
| 21 | 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        | -        | ○           | -  | -   | -          |
| 22 |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      | -        | ○           | -  | -   | -          |
| 23 |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      | -        | ○           | -  | -   | -          |
| 24 |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      | -        | ○           | -  | -   | -          |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   |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---|----|
| 25 |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투자신탁         | - | ○ | - | - | -  |
| 26 |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투자신탁         | - | ○ | - | - | -  |
| 27 |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투자신탁         | - | ○ | - | - | -  |
| 28 |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투자신탁          | - | ○ | - | - | -  |
| 29 |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     | - | ○ | - | - | -  |
| 30 |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 | - | ○ | - | - | -  |
| 31 | 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     | - | ○ | - | - | -  |
| 32 |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   | - | ○ | - | - | -  |
| 33 |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투자신탁             | - | ○ | - | - | -  |
| 34 | 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투자신탁(주식)              | - | - | - | ○ | 7) |

2. 변경 사항:

- 1) 투자대상자산 추가
- 2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- 3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4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5) 법 개정사항 반영
- 6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7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2년 11월 25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1) 투자대상자산 추가

- 미래에셋FINEMMF1호(국공채)
- 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1호
- 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2호(국공채)
-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(국공채)
-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(국공채)
- 미래에셋법인전용MMFA-4호

[집합투자규약]

| 항목                | 변경 전  | 변경 후  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제 15 조(투자 대상자산 등) | 1. ~5. <중략><br><u>6. &lt;신설&gt;</u><br><생략> | 1. ~5. <중략><br><u>6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<br><생략> |

[투자설명서]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전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후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제 2 부. 8. 가.<br>(1)<br>투자대상 | <생략><br><u>6. &lt;신설&gt;</u> | <생략><br><u>6. 환매조건부매수</u><br><u>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u> |

- 미래에셋MMF1호

[집합투자규약]

| 항목                   | 변경 전  | 변경 후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제 15 조(투자<br>대상자산 등) | <u>9.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u><br><u>&lt;신설&gt;</u> | <u>9. &lt;삭제&gt;</u><br><u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</u><br><u>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u><br><u>1.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u><br><u>2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 |

[투자설명서]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전  | 변경 후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제 2 부. 8. 가.<br>(1)<br>투자대상 | <u>9.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u><br><u>&lt;신설&gt;</u> | <u>&lt;삭제&gt;</u><br><u>[환매조건부매수,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]</u><br><u>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</u><br><u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u> |

- 미래에셋코리아증기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

[집합투자규약]

| 항목                   | 변경 전  | 변경 후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제 15 조(투자<br>대상자산 등) | <u>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u> | <u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u> |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| 1. ~2. <생략><br>3. <신설> | 1. ~2. <생략><br>3. <u>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
[투자설명서]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전   | 변경 후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제 2 부. 8. 가.<br>(1)<br>투자대상 | 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<br><생략><br><신설> | 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<br><생략><br><u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.</u> |

2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
- 미래에셋OCIO-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상생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(분배형)
- 미래에셋자산관리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
|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전   | 변경 후   |
| [제2부 별첨1] 모<br>집합투자기구에 | 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<br><생략> | 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<br><생략>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
| 관한 사항 1. 나.<br>(1) 투자대상 | <신설> |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<br>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

- 미래에셋OCIO-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상생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연금인사이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-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- 미래에셋자산관리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
|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(주식혼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---|---|---|
| 항목  | 변경 전  | 변경 후  |
| [제2부 별첨1] 모<br>집합투자지구에<br>관한 사항 1. 나.<br>(1) 투자대상 | 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<br><생략><br><신설> | 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<br><생략><br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<br>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 |

-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)
-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자산관리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

-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투자신탁

|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(채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
|---|--|---|
| 항목  | 변경 전   | 변경 후  |
| [제2부 별첨1] 모<br>집합투자기구에<br>관한 사항 1. 나.<br>(1) 투자대상 | 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<br><생략><br><신설> | 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b>환매조건부매수</b><br><생략><br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 |

4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| 펀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전<br>등급 | 변경 후<br>등급 | 변경 전(%)     | 변경 후(%)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)        | <u>6</u>   | <u>5</u>   | <u>0.39</u> | <u>0.8</u>   |
|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          | <u>4</u>   | <u>3</u>   | <u>9.58</u> | <u>10.24</u> |
|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인컴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(분배형) | <u>4</u>   | <u>3</u>   | <u>9.58</u> | <u>10.23</u> |
| 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투자신탁(주식)               | <u>2</u>   | <u>1</u>   | <u>2</u>    | <u>28.58</u> |

5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| 항목               | 변경 전   | 변경 후  |
|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   |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</u> 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</u>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| 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   | -채권<br>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<br><생략><br><br>-자산유동화증권<br>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<br><생략>  | <삭제>  |
| 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| 2. <생략><br>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<br>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u><br><u>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<생략><br>나. <삭제>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<p>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 | <p>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~③ &lt;생략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| <p>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~③ &lt;생략&gt;</p> <p>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
[투자설명서]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전  | 변경 후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<p>제2부. 8. 가. 투자 대상</p> | <p>-채권<br/>&lt;중략&gt;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<br/>&lt;생략&gt;</p> <p>-자산유동화증권<br/>&lt;중략&gt;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<br/>&lt;생략&gt;</p>  | <p>&lt;삭제&gt;</p>  |
| <p>제2부 8. 나. 투자제한</p>   | <p>-동일종목투자 (예외)<br/>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br/>나. &lt;중략&gt;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<br/>&lt;중략&gt;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&lt;생략&gt;</p> | <p>-동일종목투자 (예외)<br/>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br/>나. &lt;삭제&gt;</p> |

6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집합투자계약]
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|------|------|
|----|------|------|

|                 |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|
| 제2조(용어의 정의)     | <신설> | 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    |
| 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 | <신설> |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 |

[투자설명서]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전 |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| <신설> | 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사항 없음 |

7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전   |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제4부. 1. 가. 회사의 개요       |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<br>- <u>일반사무관리회사 : 미래에셋펀드서비스</u> |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<br><삭제> |
| 제4부. 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| 회사명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</u>   | 회사명: <u>한국펀드파트너스(주)</u>                   |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